####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 안 번 호 2189

제출연월일: 2024. 7. 24.

제 출 자:정 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등록·지정·허가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 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에 따른 등록·지정·허가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 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본인·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 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함(「민법」 제12조).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2조(「기상산업진흥법」의 개정)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1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3조(「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69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76조의11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4조(「먹는물관리법」의 개정)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24조제1호 중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일 때"를 "피성년 후견인일 때"로 한다.

제43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5조(「물환경보전법」의 개정)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38조의7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6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7조(「석면안전관리법」의 개정)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피성년후견인
- 제8조(「소음·진동관리법」의 개정)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피성년후견인
- 제9조(「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피성년후견인
- 제10조(「악취방지법」의 개정)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5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피성년후견인
- 제11조(「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 제12조(「지하수법」의 개정)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피성년후견인
- 제13조(「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피성년후견인
- 제14조(「폐기물관리법」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 제15조(「하수도법」의 개정)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피성년후견인

제20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4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피성년후견인
- 제16조(「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피성년후견인
- 제17조(「환경분쟁 조정법」의 개정)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법률 제20385호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 제11조제1호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제18조(「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6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 중 법률 제20385호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 제1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제24조(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	
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1. 피성년후견인
<u>견인</u>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	제7조(결격사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상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1. 피성년후견인
<u>견인</u>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19조(기상예보사 등의 결격사	제19조(기상예보사 등의 결격사
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ਜੈ)
해당하는 사람은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1. 피성년후견인
<u>견인</u>	
3.・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제32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의 등록) ① (생 략)	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
해당하는 자는 측정기기 관리대	
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1. 피성년후견인
<u>견인</u>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9조의2(결격 사유) 다음 각 호	제69조의2(결격 사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1. 피성년후견인
<u>견인</u>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76조의11(냉매회수업의 등록)	제76조의11(냉매회수업의 등록)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⑤
해당하는 자는 냉매회수업의 등	
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1. 피성년후견인
<u>견인</u>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제16조(결격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	
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1. 피성년후견인
<u>견인</u>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2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다음	제2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	
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1. 영업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	1
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u>피성년후</u>	<u>피성년후</u>
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일	<u>견인일 때</u>
<u>때</u>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① ~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⑤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검	
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1. 피성년후견인

<u>견인</u>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⑥ ~ ③ (생 략)	⑥ ~ ③ (현행과 같음)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의7(결격사유) 다음 각 호	제38조의7(결격사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1. 피성년후견인
<u>견인</u>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6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제63조(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	
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	
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1. 피성년후견인
<u>견인</u>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시험·검사기관의 결격사	제42조(시험·검사기관의 결격사
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유)
해당하는 자는 시험・검사기관	
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u>1. 피성년후견인</u>
<u>견인</u>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의3(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제30조의3(등록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	
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u>1. 피성년후견인</u>
<u>견인</u>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소음 · 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제42조(결격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확	
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1. 피성년후견인
<u>견인</u>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3(시험기관 지정의 결격	제11조의3(시험기관 지정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사유)
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의2제2	
항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	
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u>1. 피성년후견인</u>
<u>견인</u>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 등	제16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 등
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록의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	
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u>1. 피성년후견인</u>
<u>견인</u>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제33조(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	
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	
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	
인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u>1. 피성년후견인</u>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제23조(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	
하수개발 • 이용시공업의 등록	
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1. 피성년후견인
<u>견인</u>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의3(토양관련전문기관의	제23조의3(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결격사유)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토양관	
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	
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1. 피성년후견인
<u>견인</u>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제26조(결격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	
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전	
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u>피한정후견인</u>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	제19조의3(결격사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	
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1. 피성년후견인
<u>견인</u>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 등	제20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 등
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록의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	
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1. 피성년후견인
<u>견인</u>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4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제48조(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	
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u>.</u>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1. 피성년후견인
<u>견인</u>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
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격사유)
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해화학물	
질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제	
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취소된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경우에 한정하여 유해화	
학물질 영업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1. 피성년후견인
<u>견인</u>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	제9조(결격사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	
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	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
<u>지 아니한 사람</u>	<u>라</u>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385호 환경분쟁 조정법	법률 제20385호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법률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제11조(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	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
지 아니한 사람	<u>라</u>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제55조(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	
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b>.</b>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1. 피성년후견인
<u>견인</u>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63조(환경영향평가사) ① (생	제63조(환경영향평가사)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영향평가	
사가 될 수 없다.	<u>.</u>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u> 피한정후견인</u>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